

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고, 소방공무원·연구직 보강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,471명에서 17,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, 감소 기능 등에 대해 집행기관 정원 7명,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3명을 감축함

나. 감염병 대응(5명) 및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·검사(5명) 인력 10명을 증원하고, 사업소 기능 감소 분야 일반직 정원 5명 감축함

※ 감염병 대응 인력은 '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('16.8.)'에 의거 순증

다.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45명 증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음(비용추계서 참고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해당사항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원안동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 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제외 법령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붙임
- (2) 입법예고(2016. 10. 14. ~ 10. 18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비용추계서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조직기획팀 박종석 (☎ 2133-6732)

#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7,471명”을 “17,52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9,717명”을 “9,71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820명”을 “6,86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290명”을 “30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153명”을 “15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7,471”을 “17,521”로 하고,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“9,776”을 “9,772”로 한다.

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	226	136	16	7	63	4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9,392”를 “9,387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“329”를 “338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“276”을 “285”로 한다.

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“6,820”을 “6,865”로 한다.

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“6,786”을 “6,831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b>17,471명</b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b>9,717명</b></li> <li>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<b>6,820명</b></li> <li>3. (생 략)</li> <li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b>290명</b></li> <li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<b>153명</b></li> </ol> <p><b>【별표 3】</b>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b>17,521명</b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b>9,715명</b></li> <li>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<b>6,865명</b>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b>300명</b></li> <li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<b>150명</b></li> </ol> <p><b>【별표 3】</b>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17,47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9,77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2</td> <td>17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b>225</b></td> <td>136</td> <td><b>15</b></td> <td>7</td> <td>63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b>9,392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2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<b>32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53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32</td> <td>2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<b>27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공무원 계</td> <td><b>6,82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준감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</td> <td>28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6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령 이하 계</td> <td><b>6,78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공무원 계</td> <td>49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<b>17,471</b>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<b>9,776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2	17		1	3	1	3급	18	8		1	9		3·4급	5	5					4급	<b>225</b>	136	<b>15</b>	7	63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b>9,392</b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별정직 계	29						연구직 계	<b>329</b>						연구관	53	1		32	20		연구사	<b>276</b>						지도직 계	24						소방공무원 계	<b>6,820</b>						소방준감	5	4		1			소방정	28	2		26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령 이하 계	<b>6,786</b>						교육공무원 계	491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17,52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9,772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2</td> <td>17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b>226</b></td> <td>136</td> <td><b>16</b></td> <td>7</td> <td>63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b>9,38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2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<b>338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53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32</td> <td>2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<b>285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공무원 계</td> <td><b>6,865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준감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</td> <td>28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6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소방령 이하 계</td> <td><b>6,83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공무원 계</td> <td>49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<b>17,521</b>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<b>9,772</b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2	17		1	3	1	3급	18	8		1	9		3·4급	5	5					4급	<b>226</b>	136	<b>16</b>	7	63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b>9,387</b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별정직 계	29						연구직 계	<b>338</b>						연구관	53	1		32	20		연구사	<b>285</b>						지도직 계	24						소방공무원 계	<b>6,865</b>						소방준감	5	4		1			소방정	28	2		26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령 이하 계	<b>6,831</b>						교육공무원 계	491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17,47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9,77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2	17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b>225</b>	136	<b>15</b>	7	63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b>9,39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<b>329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53	1		32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<b>27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공무원 계	<b>6,82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준감	5	4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	28	2		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령 이하 계	<b>6,786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공무원 계	4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17,52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9,77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2	17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b>226</b>	136	<b>16</b>	7	63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b>9,38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<b>338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53	1		32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<b>285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공무원 계	<b>6,865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준감	5	4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	28	2		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방령 이하 계	<b>6,83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공무원 계	4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,471명에서 17,521명으로 총 50명 증원함과 일반직 15명 정원 조정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 
(소방공무원 +45명, 일반직 △15명, 일반직 +11명, 연구직 +9명)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6년 서울특별시 기준인건비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소계(a)						
	인건비	3,038,103	3,129,246	3,223,123	3,319,817	3,419,412	16,129,701
세출	소계(b)						
	총 비용(a-b)	3,038,103	3,129,246	3,223,123	3,319,817	3,419,412	16,129,701

※ 매년 인건비 상승율 3.0%('16년 기준)를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

## 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3,038,103	3,129,246	3,223,123	3,319,817	3,419,412	16,129,701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3,038,103	3,129,246	3,223,123	3,319,817	3,419,412	16,129,701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종석(☎ 2133-673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50명

○ 소방공무원 : +45명

- 증 원 : +45명(소방위 +2, 소방장 +2, 소방사 +41)

○ 일반직 : △6명 / +2명

- 감 원 : △6명(6급 △1, 7급 △1, 8급 △4)

- 증 원 : +2명(4급 +1, 5급 +1 )

○ 연구직 : +9명

- 증 원 : +9명(연구사 +9)

※ 일반직 정원조정 15명 중 9명은 동일직급 조정으로 소요비용 계산시 상쇄  
되므로 추계내역 미포함

2. 비용소요 추계 : 2,949,61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합 계	2,949,615	<p>◆ 총 계 : +2,949,615</p> <p>○ 소방직(+45) : +2,500,455</p> <p>▷ 소방위(+2) : 88,161 × 2명 = +176,322</p> <p>▷ 소방장(+2) : 76,981 × 2명 = +153,962</p> <p>▷ 소방사(+41) : 52,931 × 41명 = +2,170,171</p> <p>○ 일반직(△6명/+2명) : △175,161</p> <p>- 감 원 : △6명</p> <p>▷ 6급(△1) : 79,894 × 1명 = △ 79,894</p> <p>▷ 7급(△1) : 66,495 × 1명 = △ 66,495</p> <p>▷ 8급(△4) : 55,532 × 4명 = △222,128</p> <p>- 증 원 : +2명</p> <p>▷ 4급(+1) : 99,074 × 1명 = +99,074</p> <p>▷ 5급(+1) : 94,282 × 1명 = +94,282</p> <p>○ 연구직(+9) : +624,321</p> <p>- 연구사(+9) : 69,369 × 9명 = +624,321</p>	'16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